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시행

#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농림수산식품부

##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그 밖에 풋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풋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기재된 음식명 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 한다.

다. 집단급식소는 식당이나 취식(取食)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풋말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육시

설 등은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 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라.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풋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한다.

마.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전면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바.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젓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3)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 소갈비(호주산), 설렁

탕(육우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나.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 (국내산), 삼계탕(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훈제오리(중국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오리불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시행

## 식품접객업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고기(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3.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닭고기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되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다. 닭고기 조리음식 외 배달하는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생략할 수 있으나, 배달음식을 조리한 업소 내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별표2 제2호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기재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햄버거(쇠고기 : 국내산), 햄버거(쇠고기 : 호주산), 양념불고기(쇠고기 : 수입산) 

### 4. 그 밖의 공통사항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거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

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